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1,  
1층(서소문동,삼령빌딩)  
[별지 제33호서식]

공증  
인가 **한일합동법률사무소**

(전화) 02-752-8969  
(팩스) 02-755-7804

등부 2017년 제 782 호

# 인 증 서

## 책임준공확약서

주식회사 유엔텔 귀중

본 책임준공확약서(이하 "본각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41-212에 주상복합 1개 동(지하 1층 ~지상 14층)(이하 "본건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차주로서 한: (이하 "차주"), 대주로서 주식회사 유엔텔(이하 "대주"),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대신 연대보증인 심: (이하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2017년 02월 체결된 대출약정(이하 그 수정,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 각서 합니다.

아래 서명란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된 시공사는 대주에게 아래와 같은 책임준공을 보증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확약합니다.



### 1. 정의

위에서 달리 정의된 용어를 제외하고 대출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본 확약서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 2. 책임준공확약

(1) 시공사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성공사비의 지급 지연 등 기타 도급공사인의 계약 위반, 차주에 대한 부도 사유의 발생, 시공상의 민원, 본 약정상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여하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고, 시공사의 전적인 책임으로 대출시 정한 준공일(이하 "준공일")까지 본 물건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본건 건물의 사용승인(본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입주 가능한 상태로 되는 것을 포함함)을 득하고, 본 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전하게 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 시공사는 본건 건물의 완공 이전에 본건 건물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발생 이후 지체 없이 시공사의 비용과 책임 하에 이를 보수할 것이며, 만약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사는 대주가 지정한 제3자가 시공사의 부담으로 위 하자를 보수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3) 시공사는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그 증액

된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 건 건물을 책임 준공할 것이며, 증액된 공사대금을 대주의 본건 대출원리금이 전액 상환된 이후에 지급받을 것입니다.

(4) 시공사는 대출약정서의 내용을 모두 승인하며, 대주의 사전 동의 없이 공사도급계약 기타 사업계약을 변경, 해지,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대주의 대출원리금상환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3 법령 및 계약의 준수

시공사는 본 건 사업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공사도급계약 기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제반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입니다.

### 4. 피용자 및 하도급 등에 대한 책임

시공사는 본건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에 투입되는 (i) 시공사의 피고용인, 하도급업체의 선임, 감독, (ii) 피고용인과의 노사분쟁, (iii) 하도급업체와의 분쟁 및 (iv) 건설장 등의 도입 및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 5. 효력발생

본 확약서는 본 확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또한, 대출약정상 대주가 보유하는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은 동 확약서 상의 권리와 지위를 동일하게 승계하여 보유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인합니다.

2017년 02월 23일

확약인

주식회사 대신:

충청남도 공주시 ;

대표이사 박

